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 월 30 일

여 수 시 장 서근기명



여수시 조례 제2211호

붙임 여수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1부

## 여수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수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
5.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7.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8.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사업
4. 야간관광 상생 교류 확대 사업
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명소 발굴 및 육성
7.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8. 그 밖에 다양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사업의 사업성과와 평가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여수시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탁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야간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및 콘텐츠 등의 참여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 등의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액,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